# 인상고등학교 학칙(개정안)

재정 2003.02.28. 행정 제0353호 재정 2003.09.05. 행정 제1355호 개정 2004.05.28. 행정 제2887호 개정 2004.08.27 행정 제5987호 개정 2004.09.01 행정 제6078호 개정 2005.03.03 행정 제1291호 개정 2006.04.07 인상고제 1387호 개정 2011.05.02 행정 제 4497호 개정 2018.10.18. 인상고 제 8196 개정 2021.02.24. 인상고 제1394 개정 2023.04.11.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거 인상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본교는 인상고등학교라 칭한다.

####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393번지에 둔다.

## 제 2 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의2 (학년)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신설2018.10.18.)

#### 제5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 2.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1항에 해당하는 자
  - 3. 당해 연도 전라북도 입학 전형 비평준화 전형 지원 자격자

## 제 3 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 정원

#### 제6조 (학과)

본교는 보통과를 둔다.

####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르며, 남녀공학으로 한다.(개정 2006.04.06)

#### 제8조 (학생정원 )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개정2003.02.28)

- ①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유급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 하는 자
  -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5. 기타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자

## 제 4 장 교과과정 및 수업일

####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과과정은 교육부장관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2 (과외수업의 금지)(삭제2018.10.18)

####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 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2006.04.06)

#### 제11조 (고사)

- ① 정기고사는 매학기 1차고사와 2차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행할 수 있다.
- ③ 학업성취도에 관한 평가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10.18)

#### 제12조 (학기)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 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개정2004.09.01)

#### 제13조 (휴업일)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하되 매학년 시작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 1.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휴가 :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개정2006.04.06)
  - 3. 겨울휴가 : (12월 말부터 익년 2월 초순까지)(개정2006.04.06)
  - 4. 학년말휴가 : (2월 중순부터 2월 말일까지)(개정2006.04.06)

- 5. 개교기념일 : (5월 12일 )
- 6.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신설2012.03.02)
-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2호 내지 4호의 여름 ·겨울 및 학년말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 제 5 장 수료 및 졸업

####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2003.02.28)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개정2003.02.28)
- ③ 법률 제27조와 동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2003.02.28)

#### 제15조 (졸업장)(삭제)

## 제 6 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 제16조 (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수료할 수 있는 시기 이내로 한다.

#### 제17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신성적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자를 결정한다.

#### 제18조 (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

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는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범위 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실업계고와 일반계고등학교간의 전학은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제2학년 제2학기 1차고사 이전에 한한다.
- ④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는 소년원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 거 학적처리하며 세부사항은 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신설2006.04.06)
- ⑤ 이외의 사항은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신설2018.10.18.)

####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0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하다.

제21조 (전·편입학서류)(삭제2018.10.18)

제22조 (서약서)(삭제2018.10.18)

제23조 (보증인)(삭제2006, 04, 06)

제24조 (의무교육면제·유예·정원외관리 중인 자의 취학) (삭제2018.10.18.)

#### 제25조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신설2004.05.28)

①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체류하면서 정규학교에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학생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구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이나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포함)이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 외 2%이내에서 허가한다.

② 제1항의 귀국학생 중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유학 등 불법 출국하여 재학한 후 귀국한 학생, 비정규학교에서 취학한 후 귀국한 학생 등은 일반 전·편·재입학을 포함하여 학년별 정원 외 3%이내에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한다.

## 제 7 장 휴학, 퇴학 및 상벌

#### 제26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개정 2006.04.06)
-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휴학의 사유가 소멸되어 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학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으로 인하여 학년과정의 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또는 휴학이 시작된 날 복학할 수 있다.(신설2018.10.18)

#### 제27조 (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 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06.04.06)

#### 제28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29조 (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2011.05,02)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개정2011.05.02)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신설2011.05.02)
- 5. 퇴학 처분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2011.05.02신설)
- ④ 학교의 장은 법 18조 제 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11.05.02)

#### 제30조 (퇴학처분)

- ①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알선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 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 제31조 (수업료 및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2조 (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기준)

- ① 징수 및 지원·감면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지침을 준용한다.
- ② 학부모 부담 경비 등 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신설2018.10.18)

#### 제33조 (체납자 조치)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제 9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34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 할 수 있다.(개정2003.02.28)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개정2003.02.28)
- ③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2003.02.28)

#### 제35조 (조기진급의 범위)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개정2003.02.28)

#### 제36조 (대상자 선정)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 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개정2003.02.2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으로 하며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2018.10.18)
- ③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제27조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있다.(신설2018.10.18)
-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고자 할 때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신설2018.10.18)

#### 제37조 (대상자 학습방법)

- ① 자기주도학습에 의한 조기 이수
- ② 이수과정 압축에 의한 조기 이수
- ③ 상설 동학년 특별반 편성 운영
- ④ 지역합동 교과 특별반 설치 운영
- ⑤ 여름방학 심화과정·겨울방학 심화과정 운영 중에서 교과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둘 이상의 방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신설2003.02.28)

#### 제 38 조 (이수인정 평가)

정기적인 지필고사와 수시로 실시되는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한다.(신설 2003.02.28)

#### 제39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의 구성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며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③(삭제2003.02.28)

## 제 10 장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 선출 (삭제2018.10.18)

제40조 (학교의 학부모대표 선출)

제41조 (학부모대표선출관리위원회)

### 제 11 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2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3조 (학생회 구성)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
-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12 장 학칙 개정

#### 제44조 (학칙개정)

-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2011.05.02)
  - ③ 삭제

## 제 13 장 체험학습

#### 제45조 (체험학습운영) (신설2003.02.28)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규정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현장체험학습은 대마체험학습, 데마식 현장체험학습, 학교별 수련활동 등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 ③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개인 교환학습 및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 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르되 전라북도 <del>2021학년도</del>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대마체험학습 기간은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유적지 답사 및 보존활동, 자연보호 캠페인 및

주제별 현장 토론활동, 활동 후 느낌발표활동 등으로 한다.

- ⑤ 운영방안은 <del>테마체험학습 2회</del>,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del>1회, 수련활동</del> 등으로 하다.
  - ⑥ 이 외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⑦ 학교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8.10.18.)
- ⑧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이내로 한다. 이 외의 사항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운영 규정에 따른다.(2021.01.28. 신설)

## 제 14 장 기숙사

#### 제46조 (기숙사)(신설2018.10.18.)

- ① 본교 교내에 기숙사를 둔다.
- ② 본교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 재학생 중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숙사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8.10.18.)

## 제 15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 제4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48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제1조 이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198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이 학칙은 198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6조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7조 이 학칙은 199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18조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이 학칙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0조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1조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2조** (시행일)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 02. 28 행정 353호)
- **제23조** (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 09. 05 행정1355호)
- **제24조** (시행일)이 학칙은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04, 05, 28 행정2887호)
- **제25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 09. 01 행정 6078호)

단 제7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 08. 27 행정 5987호)

- 제26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05, 03, 03 행정 1291호)
- **제27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2006. 04. 07 인상고1387호)
- **제28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05.02 행정 제4497호)
- **제29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10.18 인상고제 8196 호)
- **제30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02.24 인상고제 1394 호)
- 제3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